## 「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」

## 심사보고서

#### 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0월 23일, 평창군수 제출

O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04일 회부

O 상정일자: 제261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2020년 11월 04일 상정·의결)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교육체육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「교육기본법」에 따라, 학교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우리군 학생의 안전한 주거 환경 및 건강·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마포공공기숙사의 평창군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O 입사 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6조)
  - 제4조(입사신청자격) : 평창군에 주소를 둔 평창군민의 자녀로 수도권 소재(서울, 경기, 인천)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
  - 제6조(입사신청) : 필수 구비서류(성적증명서, 합격증명서, 건강진단서, 가산점 관련 기타증명서)

- O 입사 제한 사유(안 제5조)
  - 법정 전염병(결핵 등), 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
  - 보호자의 주소가 평창군으로 되어있지 아니한 학생 등
- O 입사생 선발 시기 및 인원(안 제7조, 제8조)
  - 제7조(선발시기): 매년 2월까지 선발
  - 제8조(선발인원) : 10명(남학생 4명, 여학생 6명)
- O 심사 방법(안 제9조)
  - 제출한 성적 증명서에 의한 순위에 따라 심사
  -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것 하나만 적용
    - \* 성적의 20%: 국가유공자, 국민기초보장생활수급자,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
    - \* 성적의 10% : 평창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
  -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호자의 평창군 거주 연수를 감안하여 선발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O 본 조례안은

마포공공기숙사의 우리군 선발 입사생 자격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위한 취지로

○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입사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입사 제한 사유 안 제7조, 제8조에서는 입사생 선발 시기 및 인원 안 제9조에서는 심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"마포공공기숙사"는 서울시에서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자체간 협업으로 건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운영은 서울시 산하 SH공사 위탁관리 방식입니다. 강원도 내 참여 지자체는 6개 시·군이며(평창, 삼척, 정선, 철원, 인제, 속초), 보증금과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의 부담으로, 마포공공기숙사의 우리군 입사 가능 인원은 10명(5호실)입니다.

O 조례안은「교육기본법」 상

"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함"을 근거하는 것으로

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제8조(선발인원)제1호 단서 추가

"다만, 신청자 성비와 <del>수용</del>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"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 1부.

####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건립하고 평창군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참여하는 마포공공기숙사의 평창군 선발 입사생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마포공공기숙사(이하 "기숙사"라 한다)"라 함은 서울특별시에서 건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소재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.
- 2. "입사생"이라 함은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.
- **제3조(입사생 선발공고)**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입사생을 선발하고 자 할 때에는 매년 1월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  - 1. 신청 기간, 신청장소, 신청방법
  - 2. 신청 자격
  - 3. 선발기준, 선발인원, 선발방법
  - 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제4조(입사신청 자격) 기숙사 입사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의 자녀로서 수도권 소재(서울, 경기, 인천)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
  - 1. 전염성 질환이 없는 학생

- 2.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
- **제5조(자격제한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.
  - 1. 법정 전염병(결핵 등)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
  - 2. 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
  - 3. 보호자의 주소가 군으로 되어있지 않은 학생
  - 4. 그 밖에 입사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학생
- **제6조(입사신청)** 기숙사에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따른 기숙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 - 1. 성적증명서(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,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)
  - 2. 합격증명서(신입생에 한함)
  - 3. 건강진단서(보건소, 건강관리협회, 병원 발행분 등)
  - 4. 그 밖의 증명서류(국가유공자,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, 등록 장애인의 경우)
- **제7조(선발시기)** 입사생은 매년 2월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8조(선발인원)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적정한 인원을 구분·선 발하여야 하며, 입사 가능한 인원 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.
  - 1. 남학생 4명, 여학생 6명

다만, 신청자 성비와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- 2. 예비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사자 발생 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.
- 3.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으로 충원이어려운 때에는 규정에 따라 추가로 입사생을 선발하며, 추가 선발로도 충원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군 지역 출신 학생 중 기숙사 생활관장이 입사생을 정하도록 할 수 있다.
- **제9조(선발 및 심의)** ① 입사생의 선발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.
  - ② 입사생의 선발 시, 제6조제1호에 따른 성적의 70%를 반영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
  - ③ 입사생의 선발 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적용한다. 이 경우, 두 사유 모두에 해당하면 그 중 가산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.
  - 1. 국가유공자,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,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자녀: 성적의 20퍼센트
  - 2. 군내 고등학교 졸업자: 성적의 10퍼센트
  - ④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보호자의 군 거주 연수를 고려하여 우선 선발한다.
- **제10조(입사권)** 기숙사의 입사는 선발된 순위에 따르고, 입사기간은 당해 연 도(1년)로 한다.
- 제11조(입사 포기 및 당연 퇴사) ① 입사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 등록

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 포기자로 본다.

② 기숙사 규정에 의해 기숙사 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[별지 서식]

#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신청서

등록기준지				전화번호	
주 소				우편번호	
학 교 명					
지 원 자	성 명	한 글		한 자	
	주민등록번호	-			
		출	신 호	라 교	
	졸업년도	학 교	별	소 재	지
	년		초등학교	시(군)	읍, 면
	년		중 학 교	시(군)	읍, 면
	년		고등학교	시(군)	읍, 면
	차량 소유 여부				
친 권 자	성 명	한 글		한 자	
	주민등록번호	-			
	직 업	근 무 처		직 위	

<sup>\*\*</sup>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통 입주자격 필수 기준에 따라,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 조건 위반 시 퇴거 조치- 본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, 이륜자동차(125cc 이하) 제외

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, 마포공공기숙사 입사를 신청합니다.

202 년 월 일

지원자 성명: (서명 또는 날인)

친권자 성명: (서명 또는 날인)

## 평창군수 귀하